의안번호		제 657-1 호		
의	결	2014년 월 일		
연 월	일	(제330회)		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 출 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14년 6월 10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 657-1

제출연월일: 2014년 6월 10일 제 출 자: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로 이원화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부지사로 행정업무 기능 일원화
- 정무업무 전담을 위하여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명칭변경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<부지사 명칭변경 및 분장사무 정비> (안 제4조)

- 경제부지사 명칭변경
 - 경제부지사 → **정무부지사**
- 부지사 분장사무 조정
 - 행정부지사 : 도 행정사무 전반(경제, 건설, 바이오산업, 환경 포함)
 - 정무부지사 : 정무업무 및 기타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등

<다른 조례의 개정> (부칙)

- 「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」의 제명 변경 :「충청북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」
- 「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등 13개 조례 소관 부지사 변경 : 경제부지사 → 행정부지사
- 규제개혁추진단 신설('14.4.18.)에 따른「충청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」별표(분과위원회 설치 및 소관부서) 개정
- 3. 의안전문 : 붙 임
-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 임
- 5. 관계법령 발췌 : 붙 임
- 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"경제부지사"를 "정무부지사"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제3호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정무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
- 1. 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·회의 참석
- 2. 의회·정부·국회·정당·사회단체 등과 관련되는 업무 협조
- 3. 도정 홍보 및 언론기관 협조
- 4. 경제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
- 5. 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·행정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부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정무부지사 신규임용일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「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중 "경제부지사"를 "정무부지사"로 한다.

②「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"경제부지사"를 "행정부지사"로 한다.

- ③「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13조제2항 중 "경제부지사"를 "행정부지사"로 한다.
- ④ 「충청북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2항 중 "경제부지사"를 "행정부지사"로 한다.
- ⑤ 「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제2항과 제15조제3항 중 "경제부지사"를 각각 "행정부지사"로 한다.

- ⑥「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2항 중 "경제부지사"를 "행정부지사"로 한다.
- ⑦ 「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5조제4항 중 "경제부지사"를 "행정부지사"로 한다.
- ⑧ 「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제2항 중 "경제부지사"를 "행정부지사"로 한다.
- ⑨ 「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제3항 중 "경제부지사"를 "행정부지사"로 한다.
- ⑩ 「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제2항 중 "경제부지사"를 "행정부지사"로 한다.
- ① 「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2항 중 "경제부지사"를 "행정부지사"로 한다.
- ① 「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2항 중 "경제부지사"를 "행정부지사"로 한다.
- ① 「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항 중 "경제부지사"를 "행정부지사"로 한다.
- ① 「충청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"경제부지사"를 "행정부지사"로 한다.

⑤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별표 중 일반행정분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 명 칭	소 관 부 서		
70 70	주관실국	부 서	
일반행정 분 과	기획관리실 (정책기획관)	의회사무처, 공보관, 감사관, 규제개혁추진단 , 기획관리실, 안전행정국, 청원·청주통합추진지원단, 충북도립대학, 자치연수원, 북부출장소, 남부출장소	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수 정 안
제4조(부지사) ① 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	제4조(부지사) ① 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
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 라 한다) 밑에 행정	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 라 한다) 밑에 행정
부지사와 <u>경제부지사</u> 를 둔다.	부지사와 <u>정무부지사</u> 를 둔다.
②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	②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
1.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	1.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
2.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·감독	2.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·감독
3. 정부, 국회, 언론, 사회단체 등과의 정무적	<삭 제>
협조에 관한 사항	
4. 그 밖에 도지사를 행정적·정무적으로 보좌하	3. 그 밖에 도지사를 행정적·정무적으로 보좌하
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	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③ 경제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	③ 정무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
1. 경제, 건설, 바이오산업, 환경 관련 사무에	1. 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·회의 참석
<u>관한 사항</u>	2. 의회·정부·국회·정당·사회단체 등과 관련되
2. 의회, 정부, 국회, 언론, 정당, 경제단체 등	는 업무 협조
과의 정무적 협조에 관한 사항	3. 도정 홍보 및 언론기관 협조
3. 그 밖에 도지사를 행정적·정무적으로 보좌	4. 경제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지사가
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	지시하는 사항
	5. 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·행정적으로 보좌하
	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- 제110조(부지사·부시장·부군수·부구청장) ① 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,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, 시에 부시장, 군에 부군수,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, 그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 :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2.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정수 : 2명(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)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3. 시의 부시장,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정수 : 1명으로 한다.
 - ② 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,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. 다만,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,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·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보하되,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기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 - ③ 제2항의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·부지사는 시·도지사의 제청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. 이 경우 제청된 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그 임명절차를 마쳐야한다.
 - ④ 시의 부시장, 군의 부군수,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임명한다.
 - ⑤ 시·도의 부시장과 부지사, 시의 부시장·부군수·부구청장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,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⑥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시·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부시장·부지사를 3명 두는 시·도에서는 그 중 1명에게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- 제73조(부시장·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) 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의 부시장은 3명, 광역시·특별자치시의 부시장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2명(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 및 도는 3명)으로 한다.
 - ②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(補)하는 부시장·부지사(이하 "행정부시장" 또는 "행정부지사"라 한다)는 특별시의 경우에는 정무직 국가 공무원으로, 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무등급(「국가공무원법」 제23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)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.
 - ③ 법 제1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·부지사 (이하 "정무부시장" 또는 "정무부지사"라 한다)는 특별시의 경우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, 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.
 - ④ 행정부시장·행정부지사는 시·도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감독하며, 정무부시장·정무부지사는 해당 시·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수립에 참여하고 그 밖의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다. 다만, 시·도의 정무부시장·정무부지사는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부시장·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다.
 -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행정부시장·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정무부시장·정무부지사에 대한 명칭은 조례로 정한다.
 - ⑥ ~ ⑨ (생 략)